

# 일본의 동물 수입검역제도 개정 안내

김효룡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검역2과장

## 서론

일본은 1957년 이후 광견병 발생이 없으며, 광견병예방법에 의하여 국내 사육되는 개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광견병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광견병 발생상황 특히, 인근 아시아국가의 광견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의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국가로부터의 어린 개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광견병을 전파할 수 있는 개 등의 수입·수출요건을 강화한 ‘개 등의 수입검역규정’을 지난 10월 6일자로 개정하고 11월 6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동 개정 검역제도의 개요를 소개하여 일본으로 반출되는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님들이 동 제도를 잘 이해하셔서, 애완견등의 동물이 일본에 도착했을때 별다른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I. 개정전 제도의 개요

- 수입·수출되는 개, 고양이, 너구리, 여우, 스컹크(‘개’ 등이라 함)의 검역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개에 한함) 및 광견병예방법(1950년 법률 제24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특정동물수출입검역규정에 규정
- 수입되는 개의 경우, 수출국가(지역), 광견병예방접종여부에 의하여 즉시(12시간 이내)~180일간의 다양한 검역기간을 설정
  - 광견병비발생지역에서 수입시 12시간 이내 검역종료
  - 광견병발생지역에서 수입시 계류검역기간
    - 광견병예방접종후 30일 경과 : 14일
    - 광견병예방접종후 30일 미경과 : 14일 + (30일 - 광견병예방접종후경과일수)
    - 아무런 증명서가 없을 경우 : 180일

## II. 개정후의 검역기간, 경과규정

□ 동물 종류 및 수출국에서의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검역계류기간 상이

○ 개, 고양이

- 조건 충족 : 12시간 이내

- 조건 미충족 : 180일 이내

○ 너구리, 스킱크, 여우 : 사전조치와 증명서유무에 관계없이 180일

□ 경과규정

○ 아래의 경우는 2005.6.6일까지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간을 적용

- 일본 도착시 10개월령 이상의 개

- 광견병비발생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개

○ 수입신고규정도 2004년11월6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당일(11월6일) 수입신고해도 실제수입은 40일후인 12월 중순에 가능한점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승인서가 없어도 2004년12월31일까지는 수입인정

- 2005년1월1일 이후는 수입신고승인서가 없으면, 수입 불가 또는 180일 계류검역

□ 광견병비발생국가(지역)

키프로스, 싱가포르, 대만,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에 한함),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하와이, 괌

## III. 개정규정의 상세

### 1. 사전예정신고

(1) 사전신고

○ 개 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는 동물을 탑재한 항공기(선박) 도착일 40일 전까지, 도착예정공항(항만)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수입신고서」 제출

- 개 : 광견병예방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개의 수입신고서

- 개 이외의 동물 : 광견병예방법에 의한 동물의 수입신고서

○ 도착예정공항(항만) 동물검역소 계류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계류를 희망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시 신고

(2) 신고의 승인

- 신고서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동물검역소로부터 수입자에게 「동물수입신고승인서」 교부
- 개 등의 수입시 승인서에 첨부되어있는 신고승인번호 필요

## 2. 수입전의 준비

- 다음에 열거한 순서대로 준비하여야 하며, 순서가 틀리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다음의 (1)(2)(3)(5)에 대하여는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재 필요
- 일본이 권장하는 증명서양식(Form A, Form C)를 입수하여, 처치를 실시한 수의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수출국정부기관의 이서를 취득하는 방법 권장(검역증명서 양식 별첨)

### (1) 마이크로칩 장착

- 국제표준화기구(ISO) 11784 및 11785에 적합한 마이크로칩을 개 등에 장착
  - 장착부위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장착
  - 광견병예방주사, 광견병바이러스 혈청중화항체가 검사를 위한 채혈, 출국전 임상검사 시에는 필히 판독기로 마이크로칩번호를 판독하여 개체확인 요망
  -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마이크로칩번호 기재
- 장착되어있는 마이크로칩이 ISO(11784, 11785) 규격 이외인 경우, 수입자가 마이크로칩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한 판독기 준비요망
  - 일본도착시의 수입검사에서 마이크로칩번호가 확인불가능하거나, 마이크로칩번호가 검역증명서와 조화 불가능한 동물은 180일간 계류검사
- 마이크로칩번호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와 조화가 불가능한 개는 검사증명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송조치

### (2) 광견병예방주사(개, 고양이)

- 마이크로칩 장착후 광견병예방주사(OIE 기준을 충족하는 불활화백신만 인정)를 2회 이상 접종
  -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기 전에 접종한 불활화백신 및 생독백신에 의한 예방주사는 당 조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접종이 필요함
- 예방접종을 받는 개, 고양이는 91일령 이상이어야 하며, 2회째의 예방주사는 1회째의 접종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되고, 1회째 예방주사의 유효면역기간내 접종되어야 함



- 일본 도착시 유효면역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필히 예방주사 추가
- (3) 광견병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항체가 검사(개, 고양이)
  - 채혈시기 : 마이크로칩 삽입후 2회 이상 광견병예방주사를 실시한후, 1회째의 예방주사 유효면역기간내
  -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검사시설에 혈액을 송부하여, 광견병 항체검사 실시
    - 검사결과 항체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하고, 검사결과는 채혈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내에 일본에 도착하지 않으면 동 검사결과는 무효
    - 채혈일자, 검사시설, 검사결과는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기재
    - 검사시설의 결과통지서는 일본도착시 동물검역소에 제출
  - 혈액의 채취 및 지정검사시설에 송부는, 사전에 검사시설에 연락을 취하여, 검사신청서와 혈액이 들어있는 용기의 표시방법, 혈청분리의 필요 유무, 수송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실시
    - 혈액 채취시는 판독기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칩 번호 확인
    - 혈액 수납용기는 누출되지 않는 용기를 이용하여 밀봉
  - 개의 혈청검사시 일본국내의 검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일본법률상 혈액에는 「전염성질병(렙토스피라증)에 걸려있지 않은개 또는 걸려있을 의심이 없는 개로부터 채취된 혈액임」을 증명하는 수출국정부기관발행의 증명서 첨부요함
- (4) 항체보유후의 수출전 대기(개, 고양이)
  - 일본도착시의 계류검역기간이 12시간 이내로 되기 위해서는 전항의 채혈일로부터 180일간 이상 경과하고, 또한 2년 이내(광견병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항체가 검사결과 유효기간내)에 개, 고양이가 일본에 도착되어야 함
  - 채혈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지 않고 일본에 도착한 경우, 부족일수 동안 동물검역소 계류시설에 계류
  - 대기기간중 광견병예방주사의 유효면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필히 예방주사 추가
- (5) 출국전의 임상검사
 

출국전(가능한한 탑재전 2일 이내) 당해 동물이 광견병(개는 광견병과 렙토스피라증)에 걸렸거나 또는 걸려있을 의심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의사의 임상검사 필요
- (6) 수출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취득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취득하여 일본도착시 동물검역소에 제출

- 증명서는 일본권장양식(Form A, C)의 사용을 권장

- 증명서가 처치를 실시한 민간수의사에 의하여 서명된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의 이서(공적기관의 수의사 서명과 공인, 소속기관명, 사인날짜)가 없으면, 일본도착시 증명서로 인정 불가

□ 수출국증명서상의 주요증명사항

A. 개 또는 고양이

- ① 마이크로칩 번호(규격, 번호, 삽입연월일, 삽입부위)
- ② 불활화백신에 의한 광견병예방주사(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나서 채혈까지의 예방주사 및 채혈후의 추가접종)(주사연월일, 접종한수의사의 주소 성명,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 ③ 광견병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항체가 검사결과(채혈연월일, 채혈한 수의사의 주소 성명, 검사시설명 및 지정번호, 항체가, 검사시설의 결과통지서를 첨부)
- ④ 광견병에 걸려있지 않거나 또는 걸려있을 의심이 없는 사항(개에 대하여는 광견병 및 렘토스피라증)에 걸려있지 않은 사항 또는 걸려있을 의심이 없는 사항)
- ⑤ 광견병 이외의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주사·처치연월일, 주사·처치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백신의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B. 여우, 스컹크, 북미산너구리

- ① 마이크로칩(규격, 번호, 삽입연월일, 규격, 삽입부위)
- ② 광견병에 걸려있지 않거나 또는 걸려있을 의심이 없는 사항
- ③ 기생충 구제(처치연월일, 처치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제품명)

3. 권장되는 처치 등

(1) 예방주사

- 3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는 일본도착 30일전(백신의 유효면역기간내에 다음의 예방주사 권장)
  - 개 : 디스토펜퍼 · 전염성간염(아테노바이러스2형으로 가능) · 파보바이러스감염증의 3종혼합  
(파라인플루엔자, 렘토스피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권장)
  - 고양이 :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 ·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의 3종혼합

○ 3개월령 미만의 동물은 수의사의 지도하에 면역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회수로 가능한한 접종

(2) 기생충 구제

○ 출국전(탑재전 4일 이내)에 다음의 기생충 구제를 권장

○ 외부기생충 : 진드기·벼룩에 효과있는 약제로 처치하고, 수출시 임상검사에서 진드기와 벼룩이 없음을 확인

(3) 수송케이지

개 등에 고통을 주지 않고, 도망방지 및 안전수송을 위해 다음사항 권장

○ 동물은 가능한 한 1두씩 개별 수송케이지에 수용

○ 수송케이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격에 준하여, 동물이 자유롭게 서고 앉고 자고·회전할 수 있는 크기로, 환기에 충분한 통기구와 있고, 통기구명과 금속망으로부터 동물의 코끝과 다리가 나오지 않고 도망방지 기능을 가진 구조 일 것

(4) 도착예정 연락

○ 일본 도착시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본도착 4일전부터 도착전일까지 도착공항(항구)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전화, Fax, 전자메일로 연락

○ 연락사항 : 사전신고 승인번호, 탑재편(선)명, 도착예정공항(항구), 도착예정시각

(5) 수입제한

다음의 개 등은 수송, 계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입을 권장하지 않으며, 어쩔수없이 수입하는 경우는 사전에 수송 및 계류검사에 결될수있는지 전담수의사와 상담 요망

- 유약, 노령의 개

- 임신중, 수유중인 개

- 기왕증이 있는 유약, 투약중(기생충 구제약은 제외), 부상당한 개 등

4. 수입검역

(1) 도착시의 검사

○ 수입자는 개 등이 일본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도착공항(항구)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

- 첨부서류 :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지정검사시설이 발행한 검사통지서, 기타 필요서류

○ 개체식별이 가능하고, 증명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조건이 충족된 사실이 확인된 개, 고양

이의 계류기간은 12시간 이내로 되어, 통상 단시간내 검역종료

-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거나, 충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물 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180일 이내 계류검역

○ 발체적으로 채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2) 계류검사

○ 계류검사는 도착공항(항구)의 가까운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광견병(개에 대하여는 광견병 및 랩토스피라증) 이환여부에 대하여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 실시

- 계류장소 및 계류기간은 동물검역소에서 지시(특히 희망하는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시 신고 요망)

○ 계류검사를 위한 동물의 수송, 계류중의 사양관리, 진료를 받기위한 수의사의 왕진, 개 등의 반송·폐기·처분과 그 비용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

○ 사양관리는 관리업자가 상주하고 있는 시설은 横浜(요코하마), 成田공항(나리타공항), 名古屋(나고야), 관서공항(칸사이공항)의 4개소뿐

- 4개소 이외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할 업자의 준비가 필요

- 계류실의 넓이와 시설환경, 입퇴장의 규제사항 등은 각 시설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들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검역소에 문의요망

■ 계류시설이 정비되어있는 동물검역소 및 가까운 공·항만

나리타지소(나리타공항)☆, 관서공항지소(관서공항)☆, 나고야지소(나고야공항, 나고야항)☆, 하카다출장소(후쿠오카공항, 하카다항), 오키나와지소(나하공항, 나하항), 북해도출장소(신치토세공항, 오타루항), 카고시마공항출장소(카고시마공항, 카고시마항), 동물검역소(요코하마본소: 하네다공항, 케이힌(京浜)항)☆, 고베지소(고베항), 오사카출장소(오사카항) 모지지소(시모노세키항)

[☆는 관리업자가 상주하고 있는 계류시설]

5. 수입자의 책무

○ 일본도착시 및 계류기간중의 검사를 제외하고, 수출국에서의 검사·처치, 서류준비, 개 등의 수송, 일본도착시의 수입검사신청수속, 계류검사중의 개 등의 사양관리, 민간수의사에 의한 진료, 검사종료후의 수속, 개 등의 인수, 개 등의 반송·처분 등은 수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실시

- 민간수의사에 의한 진료는 왕진만 가능

## 6. 일본에서 수출된 후 귀국하는 개, 고양이

- 상기 2(1)(2)(3)의 처치를 하지 않고 수출된 후 귀국하는 개, 고양이에 대한 수입검역은 일본에 수입되는 일반의 개, 고양이와 동일하게 실시
- 일본국내에서 상기 2(1)(2)(3)에 따라 마이크로칩 장착, 광견병예방주사 접종(2회 이상), 광견병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항체가의 검사결과를 기재한 동물검역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취득하여 수출된 개, 고양이가 채혈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귀국한 경우에는 도착시의 계류기간은 12시간 이내로 가능
  - 해외체제중에 광견병예방주사의 유효면역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에 예방주사 접종요망
- 귀국 40일이상 전에 상기 1에 따라 수입신고서 제출 요망

## ■ 일본에서 수출된 후 귀국하는 개의 귀국시에 필요한 서류

- ① 일본 출국시에 동물검역소가 발행한 마이크로칩에 의한 개체식별, 2회 이상의 광견병 예방주사, 광견병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항체가의 검사에 대한 증명서 (해외 체재중에, 광견병예방주사를 한 개 또는 고양이)
- ②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광견병예방주사증명서 (접종연월일, 접종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 ③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광견병에 걸려있지 않거나 또는 걸려있을 의심이 없는 사항 (개에 대하여는 광견병 및 렙토스피라증에 걸려있지 않은 사항 또는 걸려있을 의심이 없는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 7. 신체장해자보조건·재해구조건·동물원 등에서 사육되는 개 등

- 수입전의 사전준비는 일반의 개 등과 동일(상기 1~3 참조)
- 개, 고양이에 대하여도 일본도착시의 수입검역시 12시간 이내에 종료되도록 사전준비 철저 요망
- (1) 신체장해자보조건, 재해구조건
  -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본에 수입될 경우, 계류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계류기간중에 신체장해자의 보조 혹은 재해에 의한 인명구조용에 이용되는 개는, 계류시설로부터의

- 외출이 인정되는 수가 있음
- 계류중에 외출할 필요가 없는 신체장애자보조견과 재해구조견(훈련과 번식 등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등)은 외출허가대상에서 제외
- (2)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개 등
  - 수입전의 사전준비는 일반의 개 등과 같으며, 동물검역소 이외의 장소를 계류장소로 하는 경우가 있음
  - 상세한 사항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동물검역소에 문의요망

別記様式第4号の1



**Approval No. :** \_\_\_\_\_ Last update: 26 Nov 2004

**The approval of import inspection is given to the importer from the Animal Quarantine Service by mail, fax or other electronic means.**

**Certificate for dogs, cats, fox, raccoon or skunk to be imported into Japan**

Note: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Form A and B or C or D.  
Each document becomes eligible with an official stamp by the exporting country.  
Enter type or write clearly in BLOCK letters in English. Where applicable, check the relevant box.  
No correction fluid shall be used. The original entry shall be struck through and remain legible. The correction shall be written adjacent to the original and signed.

**A. Declaration by exporter**

I, \_\_\_\_\_, an exporter understand the conditions for the animal to be imported into Japan and declare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ll the details to be filled i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that:

Exporter's address: \_\_\_\_\_  
 Tel / Fax: \_\_\_\_\_  
 Date (year / month / day): \_\_\_\_\_ Signature: \_\_\_\_\_

**A-1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_\_\_\_\_  
 Tel / Fax: \_\_\_\_\_

**A-2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_\_\_\_\_  
 Tel / Fax: \_\_\_\_\_

**A-3 Exporting country :** \_\_\_\_\_

**A-4 Description of the animal**

(1) Species : \_\_\_\_\_ (2) Pet name (if applicable) : \_\_\_\_\_  
 (3) Breed : \_\_\_\_\_ (4) Sex : \_\_\_\_\_  
 (5) Date of birth : \_\_\_\_\_  
 (6) Colour, coat type and other distinctive features (e.g. marking, tattoo) : \_\_\_\_\_

(7) Microchip  
 Number : \_\_\_\_\_  
 Date of implementation (year / month / day) : \_\_\_\_\_  
 ISO standard or  another Type of reader : \_\_\_\_\_  
 Implantation site of animal : \_\_\_\_\_

(8) Use  
 Personal or  Commercial pet  
 Other purposes : \_\_\_\_\_

OFFICIAL GOVERNMENT STAMP

Date: \_\_\_\_\_

별첨 1  
검역증명서 양식 Form A

별첨 2  
검역증명서 양식 Form C

Form C 1/2  
Last update: 06 Oct 2004

Approval No. : \_\_\_\_\_  
Note: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Form A and C. Each document becomes eligible with an official stamp by the exporting country.

**C-1. Veterinary Certification**

**1. Rabies Vaccination (Inactivated vaccine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OIE standard)**

Note: Read the microchip implanted in the dog or cat mentioned at A-4 and confirm the number when vaccination has been given.

《 History of the last two rabies vaccinations before blood sampling for rabies serological test 》

	Last but one <sup>1</sup> (older than 90 days)	Last <sup>2</sup> (not less than 30days after the previous vaccination)	Booster vaccination (after the blood test, if applicable)
Date of vaccination (year / month / day)			
Date of expiry <sup>3</sup> (year / month / day)			
Name of vaccination / manufacturer / batch number			
Name and address of veterinarian			

**2. Rabies serological test**

Note: Read the microchip implanted in the dog or cat mentioned at A-4 and confirm the number when sampling.  
The laboratory report of the result shall be attached.<sup>4</sup>

Date of Sampling (year / month / day)	
Name and address of veterinarian who took or supervised the blood sampling	
Name and registration number of the laboratory design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est result (IU/ml) (Equal to or greater than 0.5 IU/ml)	

<sup>1</sup> End of immunity calculated by reference to the validity period of the vaccine as stated on the package.  
<sup>2</sup> It can be abolished by an attachment of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Animal Quarantine Off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AFF), Japan, certifying all the listed items.

Form C 2/2  
Last update: 06 Oct 2004

Approval No. : \_\_\_\_\_  
Note: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Form A and C. Each document becomes eligible with an official stamp by the exporting country.

**3. Clinical examination: Immediately before embarkation ( preferably within 48 hours )**

I, \_\_\_\_\_, a veterinarian certify that:

- Today I have read the microchip implanted in the animal mentioned at A-4 and confirmed the number in A-4 (7).
- The animal mentioned at A-4 has been found to be free from any clinical signs of rabies when this certificate has been signed.
- The dog mentioned at A-4 has been found to be free from any clinical signs of leptospirosis when this certificate has been signed.

Address of veterinarian: \_\_\_\_\_  
Date (year / month / day): \_\_\_\_\_ Signature: \_\_\_\_\_

**4. Other useful health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nimal to be quarantined in the facility of Animal Quarantine Service upon arrival)

	Vaccination (except Rabies)	Treatment of internal parasites	Treatment of external parasites
Date of vaccination or treatment (year / month / day)			
Date of expiry <sup>1</sup> (year / month / day)			
Kind of vaccine or active ingredients			
Name and address of veterinarian			

<sup>1</sup> End of immunity calculated by reference to the validity period of the vaccine as stated on the manufacturer's data sheet.

**C-2 Endorsement by Official Veterinarian**

I, \_\_\_\_\_, a government veterinarian of exporting country certify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ll the details filled in the Form A and C that I have endorsed each document with an official stamp, are true and correct.

Official position : \_\_\_\_\_  
Country : \_\_\_\_\_  
Name and address of Office : \_\_\_\_\_

Signature : \_\_\_\_\_

OFFICIAL GOVERNMENT STAMP  
Date: \_\_\_\_\_

별첨 3  
개 수입신고서 양식

1. 별첨 3 개 수입신고서 양식

01(표식)작성

既に飼育設備及び畜舎設備等が整備された畜舎に輸入し飼育する畜産物

APPLICATION FOR IMPORT OF EGGS  
UNDER THE BARRIERS PREVENTION LAW AND THE DOMESTIC ANIMAL INFECTION DISEASES CONTROL LAW

年 月 日 届出者氏名及び住所  
Year Month Day Name and address of applicant

氏名 (Name) 法人の場合は、その名称  
住所 (Address) 法人の場合は、その住所

電話番号 (Telephone) FAX  
E-mail

動物検疫所長 宛  
To the Head of Animal Quarantine Service  
動物を輸入し、飼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輸入する。  
I hereby notify you the importation of the undermentioned commodity.

動物の種類 Species of commodity	数量 Quantity
生産日 (産期) Date of birth (stage)	性別 Sex
生産地 Country of origin	輸入場所 Scheduled place of arrival
乗船予定港及び乗船予定船名 The scheduled port and place of embarkation	
輸入の時期 (到着予定日) Scheduled date of arrival (year/month/day)	乗船予定船名 (航空機) 号 Name of scheduled vessel or flight No.
荷送人住所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動物の種類 Species of commodity	

この申告書は、既述の動物検疫所長に提出し、動物検疫所長より畜舎設備等が整備された畜舎に飼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輸入する動物の輸入を許可する旨の通知を受けることとなる。

その他の参考となる事項 (Other useful information)

品名  
Name of commodity

識別番号 (バーコード等)  
Means for identification (e.g. barcode)

識別番号 (マーク)  
Identification number/Mark

登録年月日  
Date of identification (year/month/day)

登録場所  
Location of identification

飼育方法 (ブリーダーの種類)  
Type of raiser/breeder

包装  
Packaging

包装形態 (箱、袋、籠)  
Type of packaging (box, bag, cage)

長さ  
Length

高さ  
Height

重さ  
Weight

重さ  
Weight

重さ  
Weight

長さ  
Length

高さ  
Height

重さ  
Weight

重さ  
Weight

長さ  
Length

高さ  
Height

重さ  
Weight

重さ  
Weight

備考  
Remarks

注意 国境の検疫官は、日本国獣疫法第44条に基づいて